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30 May 2018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복 상무이사

(Tel: 02-2112-0982)

Netherlands: New transfer pricing decree incorporates OECD standards

네덜란드: OECD 기준을 반영한 새로운 이전가격 법령 발표

네덜란드 재무부는 지난 2018년 5월 11일, OECD BEPS Action Plan (2015) 및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2017)의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이전가격 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네덜란드 이전가격 법령(nr. 2018-6865, 2018년 4월 22일 발효)은 2013년부터 시행되어 왔던 기존의 이전가격 법령(IFZ 2013/184M, 2013년 11월 14일자)을 대체하게 됩니다.

정상가격 원칙

국외특수관계자거래에 적용되는 정상가격 원칙에 대해서는 OECD 모델조세협약(OECD Model Tax Convention) 제 9조에 OECD 회원국들 간에 합의 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OECD 모델조세협약 주석서(OECD Model Tax Convention Commentary) 및 2017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서도 정상가격 원칙에 대하여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러한 OECD 모델조세협약 및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명시 된 정상가격 원칙을 2002년에

네덜란드 법인세법(Dutch Corporation Tax Act 1969)의 8b 조항으로 성문화 하였습니다.

새롭게 발표 된 네덜란드 이전가격 법령은 정상가격 원칙의 해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2017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상가격 원칙에 대한 해석의 범위는 각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3 네덜란드 이전가격 법령과 2018 네덜란드 이전가격 법령의 주요 차이점

2013 네덜란드 이전가격 법령과 비교하여 새롭게 발표 된 2018 네덜란드 이전가격 법령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 "MNE") 내에서 실질적으로 창출되는 가치와 이와 관련하여 규정되는 특수관계자거래의 성격을 최대한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관계자거래의 성격을 규정하는 절차가 명확화 되었습니다.
- 특정 상황에서의 이전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에 대한 상세한 추가 설명이 제공됨. 이러한 설명은 특히 위험분석 및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관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가치평가 방법(Valuation Method)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무형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대상 무형자산의 가치평가가 매우 불확실하고 부정확할 경우에 해당 무형자산의 가격책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 가치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들에 대하여 가치평가 예측에 있어 용인되는 편차들과 5년주기의 모니터링 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화 되었습니다.
- 기업구조조정, 특히 지적 재산의 소유권이 그룹 내 계열사로 이전되는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 회사의 주식 매입거래에 대한 설명이 명확화 되었습니다.
- 새롭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해 5%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간소화된 접근방법의 사용이 허용되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해 발생원가만이 청구 될 수 있음이 명시 되었습니다.
- 네덜란드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2017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서 사용되는 용어들과 일치 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Italy: New transfer pricing guidelines address methodology, arm's length, documentation](#)

이탈리아: 이전가격 산출방법, 정상가격 원칙, 이전가격 문서화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

이탈리아 재정경제부는 지난 2018년 5월 14일, 최근 이전가격 정상가격 원칙 관련 조항을 포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 된 이탈리아 소득세법 제 110조 7항에 부합하는 새로운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은 총 9개의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가격 산출방법, 정상가격 원칙 및 이전가격 문서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령은 9개의 조항들이 어떻게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전가격 원칙에 대한 국제관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이탈리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비교가능 거래로 선정 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들에 대한 정의 (즉, 분석대상 거래와 비교대상 거래들 간에 가격이나 마진 등의 재무지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차이점이 없음을 입증함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 또는 분석대상 거래와 비교대상 거래들 간의 중대한 차이점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조정 및 제거 할 수 있음을 입증함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
- 분석대상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정확한 기술 및 비교가능성에 기반한 정상가격 여부 판단을 위하여 고려 되야 하는 경제적 특성 및 비교가능성 요인들

이러한 경제적 특성 및 비교가능성 요인들은 가장 최근의 OECD 가이드라인에 기술 된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산출방법

OECD 가이드라인에 열거 된 이전가격 산출방법들(전통적 거래방법 및 거래이익방법)은 모두 이탈리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서도 열거 되고 인정됩니다. 이탈리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다수의 이전가격 산출방법들이 동등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전통적 거래방법 (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기타합리적인 방법 역시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인정되지만, 전통적 거래방법 및 거래이익방법들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 될 수 없는 경우 및 기타합리적인 방법의 적용 결과가 정상가격 원칙에 준수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한편,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상가격 원칙

이탈리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서 명시 된 정상가격범위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신뢰할 수 있는 비교가능 제3자 거래들에 대해 가장 적합한 이전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도출한 재무지표 수치의 범위입니다. 분석대상 특수관계자거래에서 발생한 가격이나 마진 등의 재무지표가 앞서 기술 된 방법으로 도출 된 정상가격범위 내에 포함될 경우 해당 분석대상 특수관계자거래에 적용된 이전가격은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탈리아 세무당국은 분석대상 특수관계자거래의 재무지표 값이 정상가격 범위를 하회하거나 상회 할 경우 재무지표 값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거래 당사 기업은 세무당국의 이러한 조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해당 분석대상 특수관계자거래에 적용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세무당국은 거래 당사 기업이 제출 한 입증 자료를 거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입증 자료에 대한 거부는 적합한 논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탈리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제 7조)은 저부가가치 용역의 정상가격 평가 시에 적용되는 저부가가치 용역의 정의 및 이와 관련한 간소화된 접근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 저부가가치 용역이란 회계, 감사, 법률 서비스 등 단순 지원 성격의 용역으로서 다국적 기업의 핵심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용역 제공자가 중요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 간소화된 접근방법에 따르면 원가를 발생시키는 활동 별 편익 검증이 용역 유형별 편익 기술로 대체되고, 모든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해 5%의 가산률(mark-up)이 적용됩니다.

이전가격 문서화

이탈리아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문서화에 관련 된 규정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탈리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구비하는 이전가격 보고서가 세무 조사관들이 정확하게 이전가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면, 보고서 상에서 어떤 이전가격 산출방법이 적용 되었는지, 어떤 거래 당사자가 분석대상법인으로 선정 되었는지, 또는 어떤 회사/거래 들이 비교가능 회사/거래로 선정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이전가격 보고서의 구비가 과태료 부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에 적합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전가격 보고서에서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보고서 상의 일부 내용이 부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해도 이러한 정보의 누락 또는 부정확성이 세무당국이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전가격 문서화와 관련 된 추가적인 시행 규정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발표 될 예정입니다.

[South Africa: Penalties for non-compliance; country-by-country reporting, transfer pricing returns](#)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별 보고서를 포함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관련 과태료 규정 발표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세청(The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SARS)은 2018년 5월 11일,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 "MNE")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별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포함) 또는 거짓제출 시의 과태료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과태료 규정이 도입된 2018년 5월 11일 이전에는 국가별 보고서 제출 규정 위반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새롭게 도입된 남아프리카 공화국 조세 행정법(Tax Administration Act) 210(1)항 및 211 항에 의거하여 직전 사업연도 과세 대상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ZAR 16,000의 과태료(약 140 만원)가 매월(미제출시 매월 동일한 과태료 금액 합산 부과) 부과됩니다.

새롭게 도입된 과태료 규정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에게 적용되며, 최종 모회사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에서 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다국적기업 최종 모회사 소재국 간에 자동정보교환 협정이 체결 및 발효되어 있지 않아 자회사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게 적용됩니다.

KPMG 의견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세청은 전년도 연결매출액이 100 억 ZAR(약 8,500 억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에게 국가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국가별 보고서를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혹은 대상기간 동안 특수관계 대상거래의 연결매출이 1 억 ZAR(약 85 억원) 이상(실제 발생액 또는 예상 발생액)인 경우 국가별 보고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거래 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기업에 대한 미제출시의 과태료 규정은 추가적으로 발표 예정이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2018년 9월 30일입니다.

[United States: New IRS template for requesting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미국: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 신청서 신규 서식 발표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APMA(Advance Pricing and Mutual Agreement Program)는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신규 신청서식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보류 중인 APA 신청 건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보류중인 APA 신청 건에 대하여 신규 신청서식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건을 담당하고 있는 APMA 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IRS 의 Christopher Bello 는 5월 11일에 새롭게 발표된 신규 서식과 관련하여 “모든 케이스에 적용 가능한 신청서식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신규 발표된 서식에서 중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나, 납세자가 창의적으로 신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없도록 개정된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APA 신청서식 및 관련 지침은 2017년 9월에 IRS 가 발행한 초안에 대한 피드백이 반영되었으며, 각 항목에 대하여 납세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옵션 기반(Option-based)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발표된 신청서식에 대한 일반 작성 지침 및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작성 지침 및 변경사항 관련 의견

- APMA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식 상에서 별도로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 정보라도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APMA의 동의 하에 납세자가 신청 서식을 편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옵션 기반으로 구성된 신청서식 중 선택되지 않는 일부 옵션은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APMA는 선택되지 않는 옵션이라도 신청서식 작성 오류 방지 및 검토 프로세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삭제되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 해당 신청서식은 OECD 이전가격 지침서 및 재무부 규정보다 더욱 광범위한 의미로 "Tested Party (분석대상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어 사용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일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신규 서식 상에서 "Tested Party (분석대상회사)" 용어가 사용되는 별첨 A의 4절에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 APMA는 APA가 관계사 간의 거래 가격 책정을 다루는 경우 해당 거래 내역에 대한 단순 설명보다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Appendix A의 3절에 해당 작성 지침을 추가하였습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8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